

의안번호	제 420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9월 일 (제 283 회)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 출 연 월 일	2009년 9월 3일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420
----------	-----

제출연월일 : 2009년 9월 30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국유림을 대부분아 산림경영한 분수국유림을 산림청에 반환함에 따라 지급받은 입목대금으로 도유림을 연차적으로 확대·조성하고자 도유림 재산증식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 등에 필요한 토지 및 임업 시험 연구 목적의 포지로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입하고,
- 주거생활권역 어린이공원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쉼터로 제공, 시민들의 삶의 질향상 및 건전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주시에서 추진중인 주민쉼터조성사업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 2. 주요골자

### □ 재산의 취득

####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 위 치 : 충주시 이류면 문주리 산3-1 등 16필지
- 매입규모 : 2,246,583㎡(세부내역 : 붙임)
- 사업기간 : 2009.10~12월
- 사업비 : 2,676,000천원

### □ 재산의 처분

#### 《주민쉼터조성을 위한 도유재산 매각》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193번지의외 1필지
- 매각규모 : 1,984㎡(세부내역 : 붙임)
- 매각시기 : 2009.10~12월
- 매수자 : 청 주 시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 200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단위 : m<sup>2</sup>)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1 건	2,246,583.0	2,676,000				
	건물							
	기타							
1	토지	충주시 이류면 문주리 산3-1 등 16필지	2,246,583.0	2,676,000	2009	도유림 및 시험 포지 조성	김기홍 등 10인	충주,청원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 2009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7-3)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매각 대상 수 량	공시지가	매 각 시 기	매 각 사 유	매 수 성 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계	토지	1 건	1,984.0	1,984.0	1,150,720			
	건물							
	기타							
1	토지	청주시 상당구 울랑동 1193외 1필지	1,984.0	1,984.0	1,150,720	'09.10-12	주민힘터 조성	청주시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한 취득재산 목록

(단위 :m<sup>2</sup>,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전소유자	비 고
	지목	소재지	수 량					
총계			2,246,583	2,676,000				
1	임	충주시 이류면 문주리 산3-1	1,098,744	1,394,070	09.10~11월	산림경영 목적	김기홍	매입
2	임	충주시 살미면 공이리 산65-1	396,694	327,700	"	"	김기중	"
3	임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 산13-1	363,868	231,800	"	"	청주시	"
4	임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 산13-3	355,736	226,600	"	"	"	"
5	임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 산13-2	15,868	3,340	"	"	"	"
6	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156-2	2,995	95,900	"	임업시험 연구포지	지태구	"
7	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156-10	265	8,480	"	"	지태구	"
8	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156-9	2,921	93,530	"	"	배용현	"
9	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156-11	338	10,820	"	"	배용현	"
10	답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170	2,651	90,040	"	"	오경환	"
11	답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151	2,179	73,700	"	"	장 련	"
12	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165	1,686	40,710	"	"	이규승	"
13	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154	1,051	33,650	"	"	김창기	"
14	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170-2	674	19,390	"	"	오경환	"
15	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158	516	14,850	"	"	홍종균	"
16	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157	397	11,420	"	"	홍종균	"





# 관 계 법 령 발 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법 제0 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처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p> <p>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li> <li>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li> <li>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li> <li>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li> <li>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li> </ol>